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강득구의원 공동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.

발 의 자 : 강득구·김준혁·김 현
노종면·박상혁·김예지
서미화·김태선·강경숙
이학영·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·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“지정법무병원”)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,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귀주예정지는 전국적으로 위치하나,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법무병원은 전국적으로 5개(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, 국립공주·국립나주·국립춘천·국립부곡병원)에 불과하여 지리적 접근성 불편 등으로 외래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.

이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가능 기관을 기존 의료재활소년원 및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“정신의료기관”(정신병원, 정신과의원, 정신건강의학과)으로 확대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

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제2항 전단 중 “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”을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의3(출원생의 외래진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「<u>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0조의3(출원생의 외래진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----- -.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